

세계주요국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권성안 / 국립환경연구원 환경영향평가담당관실

1. 머릿말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란 개발에 따른 환경에의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여 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1970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나, 최근에 와서 경제발전 도상에 있는 아시아 및 제 3세계국가에서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환경영향평가는 인간의 생활과 관련된 생태계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요인들의 유기적 관계속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기술이다.

따라서 과거의 환경영향평가는 지역적이거나 부분적 문제에서 출발하였으나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현재는 국가적 내지 汎地球的 문제로 대두되면서 UN의 국제기구와 관련기관을 중심으로 국제적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각국은 국제기구 및 국가간 상호교류속서 자국에 알맞는 영향평가제도 및 기법을 개발, 정착하기 위하여 연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1977년 환경보전법의 제정과 함께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었고, 1990년 환경정책 기본법을 제정하여 대상사업을 15개 확대개편하여 보다 내실있는 환경영향 평가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여기서는 보다 알맞은 환경영향평가제도 및 기법을 정착하기 위한 국제적 활동과 주요국가의 현황을 간단히 살펴봄으로써 개정된 제도와 비교하고 개선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주요 국제기구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되어 세계 여러나라와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고 있는 국제기구는 다음과 같다.

-UN기관(종합적 기금 지원기관)

- 1)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 유엔 개발계획)
- 2)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 유엔 환경계획)
- 3) FAO(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 식량농업 기구)



- 4)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
- 5)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 국제노동기구)
- 6)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 세계보건기구)
- 7) UNESCAP(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Expert Group Meeting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가회의)

66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현재는 국가적 내지 범지구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UN의 국제기구와
관련기관을 중심으로
국제적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어
 55

-지역환경기관

- 1) AEGE(Asian Expert Group on Environment : 아시아 환경전문가 회의)
- 2) SACEP(South Asian Cooperative Environmental Programme : 남아시아 협력기구 환경계획)
- 3) SPREP(South Pacific Regional Environment Programme : 남태평양지역 환경계획)

-기타지역기관

- 1) AIT(Asian Institute of Technology : 아시아 기술협회)
- 2) APDS(Asian and Pacific Development Centre : 아시아 태평양 개발센터)

3. 세계 주요국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1) 미 국

주요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주요 연방법은 60, 70 년대에 수립되었으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70년 국가환경정책법(NEPA :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과 더불어 시행령, 환경위원회(CEQ)지침 및 많은 법규가 본격화되면서 점차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담당기관은 환경보호처(EPA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와 환경위원회(CEQ :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및 각 주정부의 환경보호국이다.

연방정부의 환경보호처내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업무는 연구개발국에서 이루어 지며, 연구 개발국은 산성우·환경측정과, 환경공학·기술진 시과, 환경과정·영향연구과, 보건연구과, 건강환경 평가과로 구성되어 환경의 전반적인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그중 환경과정·영향연구과는 환경오염의 생태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평가기법 개발과 생태계·인체의 보호기준 설정, 농업환경영향평가,

병충해 전략개발 등을 연구하며, 보건연구과는 인 체건강 피해조사계획의 수립·집행·평가·예측모 델 개발 등을 연구하고, 건강환경평가과는 건강기 준 개발과 건강에 미치는 효과·위험성 평가등을 연구한다.

관계법령은 관련 작성지침에 의하며, 평가주체는 사업실시기관과 관계행정 주무부서이다.

대상사업의 정의는 NEPA 102조에 근거한 “인간 환경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사업은 각주 환경정책법(State Environmental Policy Act : SEPA)에 따라 평가 면제사업이 명시되고 있다.

워싱턴주 SEPA에 규정된 환경평가인자는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으로 대별되며, 자연환경에는 토지, 대기, 수질, 동식물, 에너지와 천연자원이며, 인공 자원에는 환경보전, 토지와 해안이용, 교통, 공공기관과 시설이다.

주민참여 방법으로는 초안 환경영향평가서(Draft EIS)와 최종환경영향평가서(Final EIS)를 주민에게 배포하고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여러단체 를 통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2) 일 본

대부분의 사업은 1972년 일본 각의가 결의한 “각 종 공공사업에 있어서의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閣議 要解”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항만법, 공유수면 매립법, 공장입지법 등을 일부 개정하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條例나 要綱등을 제정하여 개발사업에 대한 영향평 가를 실시하고 있다.

담당기관은 중앙정부의 환경청 및 지방자치단체 의 환경관련기관(東京都 : 환경보전국, 三重縣 : 생활 환경부, 四日市市 : 환경부)이다.



· 모노레일의 신설·개량(철도의 건설), 비행장 건설 및 변경(공항건설), 매립 또는 간척(개간 및 간척)(관광 단지 개발)(체육시설)(산지의 개발)(특정지역개발)(폐기물 처리시설), 자동차주차장 설치 및 변경, 제2종 특정 공작물 설치변경 등 26개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환경청의 환경평가인자는 오염규제와 관련된 인자와 자연환경의 안전과 관련된 요소로 구분하며, 東京都의 경우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으로 대별하며, 자연환경에는 풍해, 지형·지질, 식물과 동물, 지반침하이며, 생활환경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악취, 소음, 전파장해, 일조장해, 경관, 진동, 저주파 공기진동이며, 사회·경제환경에는 사적·문화재이다.

주민참여 방법으로는 評價書案(30일), 見解書(20일), 評價書(45일)의 공시·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3) 캐나다

1970년대 이후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 및 민간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1973년 내각의 결의(1977년 수정결의)하면서 환경부내에 환경영향평가 사무소를 설치하여 연방정부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었고, 각 주정부들도 환경평가법을 제정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담당기관은 어업 및 환경부내 연방환경영향평가 사무소(FEARO: Federal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Review Office)와 환경평가위원회(Environmental Assessment Panel) 및 각 주정부의 환경관련 기관이다.

연방환경영향평가사무소(FEARO)는 환경평가판넬의 구성운영, 환경영향의 스크리닝(Screening)과정의 개발 및 환경부장관을 대신하여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평가절차를 대행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을 주기능으로 하며, 환경평가위원회(EAP)는 심각한 또는 불확실한 잠재적 영향을 야기할 수 있는 사업의 정밀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구성한다.

관계법령은 연방환경영향평가 검토지침에 의하여 각 주정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

대상사업의 정의 연방정부의 결정에 따라 정부기관이 사업제안자 또는 사업실시자인 사업·활동·계획, 정부기관의 지원하는 사업·활동·계획,

중앙정부의 환경청내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업무는 기획조정국에서 이루어 지며, 기획조정국은 기획조정과, 환경관리과, 환경영향심사과, 환경연구기술과로 구성되어 환경행정의 관리적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그중 환경영향심사과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기획·입안·추진을 하고, 各省廳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무의 조정을 행한다.

관계법령은 각 都道府縣의 要綱, 條例, 指針에 의하며, 평가주체는 평가대상사업 실시기관이다.

대상사업의 정의는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의 규정에 의하며, 東京都의 경우 대상사업의 규정『(0)는 우리나라 15개 대상사업 규정』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설치·변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 시가지 재개발사업, 신도시 기반정비사업, 도매시장 설치·변경, 유통업무단지 조성사업, 주택단지 개발, 고층건축물 신설, 토지구획 정리사업, 신주택시가지 개발, 주택 재개발사업, 건축물을 위한 토지조성(도시개발), 공장의 설치·변경, 공업단지 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공업단지 조성), 토석채취 및 광산채굴, 발전소 송전선로 설치·변경, 가스저장 시설 설치·변경, 석유시설 설치·변경(에너지 개발), 부두시설(항만시설), 도로의 신설 및 개축(도로 건설), 댐건설 및 방수로의 신설(수자원 개발), 철도

정부기관의 토지를 이용하는 사업, 민간사업으로 허가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퀘벡주의 경우 대상사업의 규정을 보면 댐 및 제방건설, 준설·굴착·성토, 수로 건설 및 변경, 항만 건설 및 변경, 도로路盤건설, 철도건설, 공항건설 및 확장, 파이프라인 및 가스액화시설건설, 송전선 건설 및 위치변경, 발전소건설, 원자력발전소건설 및 확장, 공장건설, 축산시설, 광산개발 및 운영, 살충제 살포, 도시폐수처리시설, 가스저장시설, 독극물 배출 및 저장시설 등 20개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환경평가인자는 주거토지이용, 자원토지이용, 지질, 토양, 식물, 동물, 수질, 대기, 공공시설로 구분하고 각각의 항목에 세부인자로 구분된다. 주거토지이용의 경우 주거, 상업, 산업, 교통, 편의시설, 위락시설, 문화재 등이 세부인자이다.

주민참여방법은 환경평가위원회(EAP)의 주체가. 주민이며 따라서 위원회 구성, 평가서 작성지침, 검토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이루어진다.

4. 맺음말

앞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세계각국은 자국에 맞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정착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정부는 행정관리적 측면에서 제도를 시행하면서 사업제안시 설명회, 공청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된 審議會, 協議會 등과 유기적 교류를 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정부는 법적 규제측면보다는 보다 완벽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적 성격이 강하며, 우리나라와 같은 주민참여 방식과는 다른 사업제안자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시행후 문제가 발생할때는 사업제안자나 담당 평가전문회사나 전문가가 주민으로부터 소외됨으로써 자발적으로 공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이 특색이다.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주요환경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수렴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여러가지 제도적 단점을 보완하고 환경정책기본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66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정부는 법적 규제측면보다는
보다 완벽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적 성격이 강하며,
사업시행후 문제가 발생할때는
사업제안자나 담당 평가전문회사나
전문가가 주민으로부터
소외됨으로써 자발적으로 공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이 특색이다.

67

같이 일본의 제도를 많이 도입하므로써 아직까지 우리실정에 알맞는 제도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몇가지 살펴보면 첫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중매체의 활발한 이용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둘째 더욱 완벽한 영향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미국의 CEQ나 캐나다의 FEARO와 EAP같은 전문적인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기관과 사업주체자, 주민간의 정보교환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평가절차 및 방법상 효과적인 방안이 계속적으로 창출되어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차원의 영향평가 제도가 정착되어 보다 내실있는 지역개발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며, 환경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정보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환경정보를 향상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기초 정보 및 자료의 축적, 국제간 활발한 교류 및 주변국과 긴밀한 환경정보교환, 환경관련기관간의 환경정보망 구축, 최신기자재의 도입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섯째 전문적인 인력양성을 위하여 장·단기 양성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체제 및 기금조성이 필요하다.